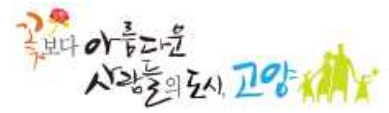


【제 1307 호】



2016년 9월 20일 (화)

# 고양시보

## 차 례

### 입법예고

고양시 공고  
제2016-1393호

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

### 고 시

고양시 고시  
제2016-228호

고양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8



| 발행 : 고 양 시 | 편집 : 공보담당관 |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.  
| (우)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(주교동 600) | ☎ (031) 8075-2095

##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9월 20일

### 고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「문화재보호법」 및 「병역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, 행주산성 무료관람 대상에 ‘고양시민’을 추가하여 고양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관광도시를 구현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조례의 관계법령을 “「문화재보호법」 제44조”에서 “「문화재보호법」 제49조”로 정비함.(안 제1조)
- 나. 「병역법」에 따라 군경의 정의를 정비함.(안 제3조제3호)
- 다. 무료관람 대상자에 고양시민 및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·의사자유족을 추가함.(안 제7조제3의2호 및 제13호)

4. 자치법규안 : 별첨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6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16년 10월 10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인터넷 등

다. 기재내용 : 주소·성명·연락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고양시장 (행주산성관리사업소)

○ 주 소 :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5번길 89 (행주외동)

○ 전 화 : 행주산성관리사업소 (031-8075-4642)

○ 팩 스 : 031-938-1720

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자치법규명 :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성명(단체명) :
  - 주 소 :
  -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

##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 제44조 규정에 따른 문화재의 공개관람료 징수”를 “「문화재보호법」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의 공개관람료 징수 및 감면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”를 “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2세 이하인자”를 “12세 이하인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전투경찰·순경·경비·교도 및 상근예비역·공익근무요원”을 “의무경찰·의무소방원·상근예비역·사회복무요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시장”을 “고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13호 중 “인정되는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하여 제1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, 유족 중 관련증 소지자. 다만, 상이등급 1급·2급·3급은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.

3의2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와 가족, 의사자유족 중 관련증 소지자. 다만, 의상자 1급·2급은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.

13.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. 이 경우,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과		행주산성관리사업소
입안자	소장 성명	사업소장 배상호
	팀장 성명	운영관리팀장 최병선
	담당자 성명·전화	안순자 (031-8075-4642)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행주산성(사적 제56호)의 보호관리 및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4조 규정에 따른 문화재의 공개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..... ....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의 공개관람료 징수 및 감면..... .....</p>
<p><b>제3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어린이 :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</li> <li>2. (생략)</li> <li>3. 군경 :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(전투경찰·순경·경비·교도 및 상근예비역·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)</li> <li>4. ~ 6. (생략)</li> </ol>	<p><b>제3조(정의)</b> .....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.... : ..... 12세 이하인 사람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군경 :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(의무경찰·의무소방원·상근예비역·사회복무요원.....)</li> <li>4. ~ 6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<b>제4조(공개시간 및 휴관일)</b>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<b>제4조(공개시간 및 휴관일)</b>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고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..... ..... ....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7조(무료관람)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2. (생략)</li> <li>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유족증서 소지자. 다만,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</li> </ol>	<p><b>제7조(무료관람)</b> ..... ..... 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, 유족 중 관련증 소지자. 다만, 상이등급 1급·2급·3급은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.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<p><u>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.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4. ~ 12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13. 그 밖에 시장이 무료입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</u></p>	<p><u>3의2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와 가족, 의사자유족 중 관련증 소지자. 다만, 의상자 1급·2급은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.</u></p> <p>4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3.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경우,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.</u></p> <p><u>14. .... 인정하는 .....</u></p>

## 고양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2 제1항 및 「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」 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127호) 3-4 가호에 따라 고양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9월 20일

### 고 양 시 장

#### 고양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

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2 제1항 및 「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」 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127호) 3-4 가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9퍼센트로 한다.
2.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비율을 감안하여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 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(변경인가를 포함한다)를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